제32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2차 문화복지위원회

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9. .

복지환경위원회
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본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제21조에 따라 2026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가족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6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,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을 추진함.

3. 주요내용

○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
- 건강가정지원사업, 다문화가족지원사업, 아이돌봄지원사업, 그 밖에 시장 등이 건강가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○ 現 수탁기관 :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(단장 : 함도훈)

○ 現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6. 12. 31. (5년)

► 향후 위탁기간 : 2027.1.~2031.12(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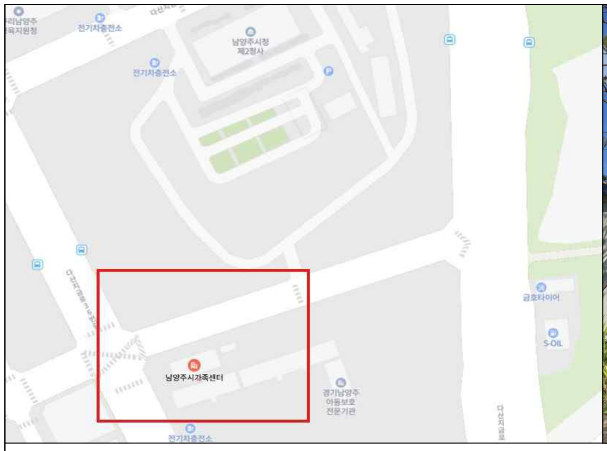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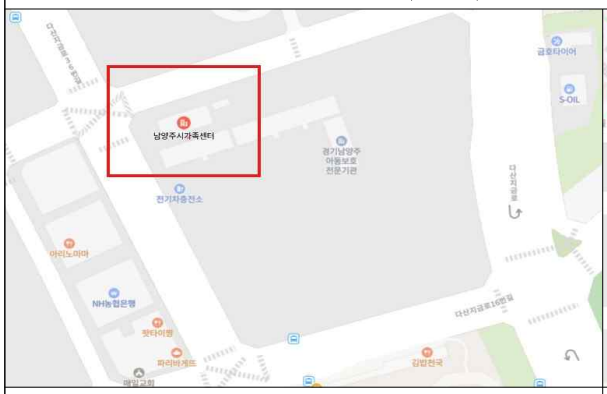
○ 시설현황

시설명	위 치	규 모	종사자	비고
남양주시가족센터	다산지금로16번길 95(다산동)	267㎡	29명	

※ 부속시설 : 한국어 교실(다산동), 공동육아나눔터(다산동)

※ 기타 종사인력 : 아이돌봄사 350명, 방문지도사 11명, 보듬매니저 2명, 시간제 3명

○ 위치도

<table>
<tr><td></td><td>
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(본관) 남양주시가족센터
다산지금로16번길 95 (청6부지)</td></tr>
<tr><td></td><td>
</td></tr>
<tr><td>(부속시설) 한국어 교실
경춘로 522 남양주시청 제2청사(별관 2층)</td><td>(부속시설) 공동육아나눔터
다산중앙로145번길 38(다산동)
(다산역경기행복주택 상가 1층)</td></tr>
</table>

4. 검토의견

동 센터는 2008년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각각 운영해 왔으나 2018년부터 가족센터로 통합운영된 사항으로 가족센터는 그 기능과 지원 업무 등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될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추친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임2 관련 법령

○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, 제35조의2

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(이하 "건강가정사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
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

1.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.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

④ 센터의 조직·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·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5조의2(가족센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

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○「남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2조

제12조(위탁) ① 시장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5항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은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2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.
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구 분	건강가정지원센터	다문화가족지원센터	비 고
개소일	2005. 07. 08.	2007.02.07.	직 영
1차	2008.05.20.~2009.12.31. (2년)	2008.05.20.~2009.12.31. (2년)	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⇒ 다문화가족지원센터 (2009년)
2차	2010.01.01.~2012.12.31. (3년)	2010.01.01.~2012.12.31.(3년)	통합 위탁계약 체결
3차	2013.01.01.~2015.12.31. (3년)	2013.01.01.~2015.12.31.(3년)	
4차	2016.01.01.~2018.12.31. (3년)	2016.01.01.~2018.12.31.(3년)	건강가정.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(2018년)
5차	2019.01.01.~2021.12.31. (3년)	2019.01.01.~2021.12.31.(3년)	경복대학교